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22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936	박지혜의원	2024. 8. 1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 원특허소위원회 회부
2		2204086	서왕진의원	2024. 9. 1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
3		2202460	김태년의원	2024. 8. 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 원특허소위원회 회부
4		2203748	박성민의원	2024. 9. 6.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
5		2202356	정부	2024. 7. 2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4, 9.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 11. 2 1.)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 4. 11. 28.)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공장 신·증설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3조제7 항제6호 신설).

- 나.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안 제38조의3).
- 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

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입주기업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1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 유)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 $\overline{(7)}$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 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6. (생략) ⑧ ~ ③ (생략) ⑧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 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 부를 임대할 수 있다.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 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 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 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 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 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 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 치하려는 경우
 -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 용지에 대하여 다른 입주기업 체(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 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 업용지를 재료 적치장(積置 場)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입주기업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 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 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

는 이 법 제3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제9항 단서에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u>업</u>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 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1(사업) ①
<u>.</u>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
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
장계 씨는 비가기비에 시면서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